



제296회 임시회
2010. 12. 6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
관한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24일

3. 제안이유

-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을 통하여 대학생 누구나가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·추진(제3조)
- 나.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, 학자금 지원순위 대상을 규정(제4조 내지 제6조)
- 다.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(제7조)
- 라.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등 규정(제8조, 제9조)
- 마. 학자금 이자지원의 조건이나 규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(제10조 내지 제16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동기

- 동 조례안은 충북지역 대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

나. 그간 주민발의 조례안 추진 경위

- 조례안명 :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- 추진방법 : 주민발의 청구(청구인수 14,996명)
- 주요내용 : 지원대상(전문대 이상), 지원방법(대출이자 보전), 재원조성 (기금/출연금, 차입금, 기금운용 수익금 등)
- 추진경위
 - '09. 5. 6 주민발의로 청구인 명부 접수(청구인수 14,996명)
 - '09. 5.13/6.3 조례청구 공표 / 조례제정 청구결과 수리
 - '09. 8.11 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회부
 - '09. 9.15 조례안 상정(보류 의결)

<보류의결 사유>

- ▶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고 제도간 사회적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문
- ▶ 권한을 벗어난 자치사무는 위법성이 제기 된다며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간 연계성, 최근 정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와 조례와의 상충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 결정

※ 상임위의 보류로 계류된 상태에서 8대의회 폐원으로 자동폐기

다. ‘정부대출 학자금 제도’ 와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’ 대출 제도와의 관계

- 정부대출 학자금 제도 : 동 조례안의 내용임.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
 - 관계법령의 개정 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제도로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,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
 - ※ 법률 개정(2010.1.22) /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- 2010년 신입생 및 재학생 적용 여부
 - 2010년 대학교 신입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적용을 받고 있음.
 - 재학생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과 정부대출 학자금이 선택사항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생은 중복도에서 지원대상이 아님.
- 학년별 적용 여부
 - 2010년 신입생 :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적용
 - 2010년 : 2·3·4학년
 - 2011년 : 3·4학년
 - 2012년 : 4학년
 - 2013년 : 복학생 이자지원('09년 이전학번 복학생에 한해 이자지원)

라.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 사항

○ 소득분위별 소득구간 산정 및 대출 학생수

구분	무이자	저리 1종	저리 2종	일반대출
	(1~2분위)	(3~5분위)	(6~7분위)	(8~10분위)
소득구간	662~1,907만원	1,908~3,571만원	3,572~4,839만원	4,840~8,509만원
학생수	691명	421명	348명	1,534명

※ 자료 출처 :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산식에 의거 산정함.

※ 대출 학생수 : 2010년 1학기 기준

- 소득 분위별 지원 기준(※ 대출이자 정부 기준금리 : 5.7%)
 - 무이자(1~2분위) : 정부가 5.7% 전액 지원
 - 저리 1종(3~5분위) : 정부 4%, 도 1.7% 지원
 - 저리 2종(6~7분위) : 정부 1.5%, 도 4.2% 지원
 - 일반대출(8~10분위) : 지원이 없음

다. 타 시·도 조례 운영사항

- 제 정 : 8개 시도(인천, 광주, 대전, 경기, 전북, 전남, 경남, 제주)
- 미제정 : 7개 시도(서울, 부산, 대구, 울산, 강원, 충남, 경북)
 - ※ 미제정 7개 시도는 제정 준비중에 있음

바. 대학생 이자지원 관련 비용추계 : 별첨 참조

2. 검토결과

- 동 조례안은 지난 2009년도 9월, 청구인 14,996명이 서명하여 주민발의로 청구한 「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소방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계류상태에 있다가 8대의회가 폐원됨에 따라 조례안이 자동폐기 되었음.
- 그러나,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도내 소재 대학,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우리 위원회 의원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.
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가 금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2010년 대학교 신입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적용 받고 있으며, 재학생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과 정부대출 학자금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,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학생은 충청도에서

지원대상으로는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.

- 그리고, 2013년도 이후에는 '09년도 이전 학번 학생들이 졸업하고 복학생에 한해 이자지원 대상이 되고 있음.
- 따라서, 동 조례안은 2010년 신입생을 제외한 2·3·4학년과 복학생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,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지금 현재 지원대상 학생이 졸업하는 2013년 이후에는 복학생에 한해 지원대상이 됨으로 동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.